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799 |
|----------|-----|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기재 의원(찬성자 9명)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라. 상정결과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박기재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고, 때로는 성폭력 등이 은폐·축소되어 피해예술인에 대한 구제에 어려움이 나타남.
- 한편, 「예술인 복지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2019년 1월 17일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서울

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예술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조례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박기재 의원(중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였음.

- 문화예술인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 사업장 등과 같은 유형화된 조직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 임시직 및 프리랜서로 참여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최근 몇 년간 미투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되는 행태가 다수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문화예술인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음.

-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남인순의원 등 10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년 3월 28일 발의하고,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 중에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를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문제가 대두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sup>1)</sup>.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에서 추진해야 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에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의 소관을 맡은 서울시 문화본부도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고 밝힘.

또한 동 개정조례안의 검토 및 심사 이후,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및 창작환경의 실태조사와 사회적으로 사각지대로 대두된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예술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만을 운영 중임.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799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1일  
발 의 자 : 박기재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동길, 권순선, 권영희,  
김소영, 김제리, 김호평,  
오현정, 이동현, 홍성룡 의원  
(9명)

## 1. 제안이유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고, 때로는 성폭력 등이 은폐·축소되어 피해 예술인에 대한 구제에 어려움이 나타남. 한편, 「예술인 복지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2019년 1월 17일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예술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p> <p><u>&lt;신   설&gt;</u></p> |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br/>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br/>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br/>마련하여야 한다.</u></p> |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2항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곤란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시장의 책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